

**-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**



2025. 4.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제안일자 : 2025. 4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 중 1일로 한다.(2025. 6. 5. 목요일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위원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7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○ 의회사무국 감사일정: 2025. 6. 5.(목)

3. 감사대상 기관

○ 마포구의회사무국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의 회 운 영 위원회	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(7명)	마포구의회 사 무 국	의회운영 위원회실	신준호	김자영

5. 감사일정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 단계	2025.4.25.(금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작성	
	4.25.(금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~ 4.25.(금)	○ 감사서류제출 요구 목록 수합	
	~ 5.16.(금)	○ 감사 자료 수합 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 단계	6. 5.(목)	○ 위원장의 감사선언 ○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감사종료 선언	
감처 사리 결단 과제	~ 6.27.(금)	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 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	
	~ 8. 1.(금)	○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6. 감사 진행순서

- 가. 감사실시 선언
- 나. 위원장 인사
- 다. 증인선서
- 라. 피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마. 업무보고 청취
- 바. 질의·답변
- 사. 감사종료 선언

7. 감사요령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8. 유의 사항

- 가.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.
- 나.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다.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9. 감사결과 보고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
(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실시경과, 주요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·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 기타사항 등을 포함)
 - 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의장에게 제출
 - 본회의 의결로 승인

10. 행정사항

- 가. 본 계획에 없는 세부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 하에 작성 시행한다.
- 나.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, 감사반 변경,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.
- 다. 본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,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.